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9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위성곤·박홍배·김영배

서삼석 · 윤호중 · 한병도

황 희 • 윤준병 • 이개호

박민규 • 박균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·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 운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.

하지만 자율방재단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,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
본법」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를 각각 제75조의4부터 제75조의6까지로하고,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자율방재단의 인적 ·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
  - 나. 재난 예방·대비를 위한 지역의 순찰·점검 등 사전 예찰 활 동
  - 다. 재난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
  - 라.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등 지원
  - 마.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지원
  - 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 예방·대응 ·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 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있다.
- ⑥ 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의3(자율방재단중앙회) 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앙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·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78조제3항 중 "제75조의3제1항에"를 "제75조의5제1항에"로 한다.

제78조의2제2항 중 "제75조의3제1항에"를 "제75조의5제1항에"로 한다. 제79조제6호의2 중 "제75조의3제7항을"을 "제75조의5제7항을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율방재단으로 본다.
  - ② 이 법 시행 전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제7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율방재단중앙회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5조제1항 전단 중 "제48조, 제66조"를 "제48조"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376호 재난 및	법률 제20376호 재난 및
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	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<u> &lt;신 설&gt;</u>	제75조의2(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
	①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
	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
	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
	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
	이하 이 조에서 같다)ㆍ군수ㆍ
	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
	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
	여 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 <u>할</u>
	<u>수 있다.</u>
	②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다음
	각 호와 같다.
	<u>가. 자율방재단의 인적·물적</u>
	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
	<u>나. 재난 예방·대비를 위한</u>
	지역의 순찰・점검 등 사
	전 예찰 활동
	다. 재난관리 관련 프로그램
	개발 및 교육·훈련
	라.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
	<u>구 등 지원</u>

- <u>마.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 등</u> 공중보건 관리 지원
- 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렁으로로 정하는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 예방 ·대응·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 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재단 의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 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<u>⑥</u> 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

<신 설>

제75조의2(안전책임관) (생 략)

증 교부 등) (생 략)

제75조의4(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) (생 략)

제7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제7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· ② (생 략)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

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5조의3(자율방재단중앙회) 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재 단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 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 으며, 중앙회의 운영 등에 대하 여 지도 및 관리 • 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75조의4(안전책임관) (현행 제7 5조의2와 같음)

제75조의3(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제75조의5(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) (현행 제75조의3과 같음)

> 제75조의6(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) (현행 제75조의4와 같 음)

• ② (현행과 같음)

(3) ----

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,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,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·사용,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·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④ (생 략)

- 제78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) ① (생 략)
  -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 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•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 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 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

<u>제75조의5제1항에</u>
<ul><li>④ (현행과 같음)</li><li>제78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</li><li>원 의제) ① (현행과 같음)</li><li>②</li></ul>
<u>제</u> 75조의5제1항에
 제79조(벌칙)

- 의 벌금에 처한다.

  1. ~ 6. (생 략)
  6의2. <u>제75조의3제7항을</u>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
- 를 알선한 자 7. (생 략)

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
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<u>제75조의5제7항을</u>
7. (현행과 같음)